

2019년도 제27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12. 3.(화요일), 10:3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 최승수(분과위원장), 박성호, 박재화, 박정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267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495건(안건번호 제2019-157866호~158573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19-157866호는 불법복제물을 이메일로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에 대한 사안으로, 사이트 정보를 기재한 쪽지를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만으로는 심의대상 게시물을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건번호 제2019-157867호~157868호 영화 상영관에서 촬영한 쿠키 영상을 제공한 사안과 안건번호 제2019-158571호~158573호 네이버 밴드에서 어문 저작물을 제공한 사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안건번호 제2019-157869호~157871호는 블로그에 일본 애니메이션 음원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1,486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27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267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회의록 4쪽, 5쪽, 8쪽, 10쪽, 11쪽, 12쪽, 13쪽의 OSP명, 8쪽의 권리자명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 해당 정보는 비식별 처리한 후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B 위원 : 이견이 없음.
- C 위원 : 해당 OSP명들은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 D 위원 :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OSP명과 권리자명은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

기로 결정함.

3.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은 안전번호 제2019-157866호~158573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1,495건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 보고로 같음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57866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네이버 카페 '□□ □□□'의 이용자가 2019. 11. 18. '음원 폭풍 수집중!!!'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작성하였음. 게시자는 댓글로 불법복제물인 음원파일을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음원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의 주소, 정보를 보내주는 것으로 추정됨. 해당 사이트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을 제공하는지 합법 저작물을 제공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게시자는 2019. 11. 19. "이제 정보 공유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였음. 보호원 직원은 2019. 11. 25. 사이트 정보를 얻기 위해 댓글을 남겼으나 그 후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을 통해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157866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D 위원 : 게시자는 사이트 정보를 기재한 쪽지를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 침해를 방

조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정권 고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합함.

- C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57866호는 게시자가 음원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정보를 기재한 쪽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설령 게시자가 쪽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권침해 방조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 의견임.
- A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현재 정보 공유도 중단되어 있음.
- B 위원 : 이견 없음. 안전번호 제2019-157866호는 저작권침해 방조의 근거가 부족하여 부결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안전번호 제2019-15786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157867호~157868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57867호는 네이버 이용자가 2019. 11. 21. '겨울왕국2' 쿠키영상 35초 분량을 '▲▲▲▲▲▲▲▲' 블로그에 게시한 사안임. 해당 게시글에는 "#겨울왕국2 쿠키영상1있음 스포주의 엔딩크레딧 지루함 주의"만 기재되어 있음. 영화관에서 쿠키영상을 촬영한 사람과 게시자가 같은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위 쿠키영상의 재생 횟수는 2019. 11. 30. 기준 25,674회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57868호는 네이버 이용자가 2019. 11. 23. 영화 '겨울왕국2' 쿠키영상 38초 분량을 영화 포스터, 영화 티켓, 스크린샷(screenshot), 영화 감상평

등과 함께 블로그에 게시한 사안임. 해당 쿠키영상은 게시자가 직접 영화관에서 핸드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임. 쿠키영상의 재생 횟수는 2019. 11. 30. 기준 320회임.

- B 위원 : 쿠키 영상이 무엇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 쿠키 영상이란 영화에서 엔딩 크레딧 전후에 짧게 추가된 장면으로 에필로그 영상이나 속편의 예고 영상임.
- B 위원 : 쿠키 영상이 두 건인데 모두 영화관에서 촬영한 것으로 벌칙 규정에 해당되고 저작권 침해죄와는 별개의 형사 범죄며 저작권법 제104조의6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157867호는 촬영한 행위자가 게시자라고 전제했을 때 도촬금지 규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임. 하지만 제104조의6 위반이라고 하여 저작권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 제136조와 제137조는 다름.
- B 위원 : 저작권법 제104조의6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시정권고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위원회는 저작권침해 방조에 준해서 저작권 침해 정보를 보고 있음. 저작권법에서 형사처벌하는 행위는 맞지만, 이 정도로는 시정권고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함.
- B 위원 : 저작권법 제104조의6 위반에 해당되는 행위에 국한해서 본다면 시정권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함. 다만 저작권 침해 또는 침해 방조에 해당되는 정보에 해당될 경우에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는데

해당 안건은 어떻다고 보아야 하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위반이 명백한 이상 심의위원회에서 삭제 또는 전송중단은 하지 않더라도 경고의 시정권고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D 위원 : 게시자가 해당 쿠키 영상을 촬영했다고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추정하여 경고할 수 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에 영화 티켓을 촬영한 사진이 게시되어 있음.
- D 위원 : 다른 사람이 촬영한 쿠키 영상을 블로그에 게시할 수도 있으므로 쿠키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블로그 이용자와 동일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음.
- 성원영 전문위원 : 형사사건이라면 위원님 말씀처럼 볼 수 있음.
- D 위원 : 영화 감상평도 창작성이 있다고 생각함.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쿠키 영상을 올린 것이 영화 홍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C 위원 : 기존에 마블 영화의 쿠키 영상도 부결이 아닌 경고의 시정권고만 했던 이유는 다수의 일반인들이 저작권법 제104조의6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야기되는 것을 모르고 스마트폰으로 녹화하는 경우가 있어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이를 계도하는 차원에서 경고를 하였기 때문임.
금번 심의대상 안건인 쿠키 영상도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성원영 전문위원 : 시정권고의 본래 취지가 상업적 저작물을 온라인 상에서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대상인 쿠키 영상에 해당 영화의 수요를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함.
- C 위원 : 네티즌들은 본인이 올린 콘텐츠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되는 것에 가장 민감함. 이에 블로그 게시물은 유지하되, 블로그 이용자에게 저작권법 제104조의6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필요함.
- D 위원 : 위험성에 대한 부분까지 심의위원회에서 경고를 해줘야 하는지 의문임. 법률위반 행위를 했다면 본인이 책임져야 함
- C 위원 : 시정권고 제도가 권리침해 확산을 조기에 예방하는 것으로 제도라는 것도 침해확산의 예방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임.
- D 위원 :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지 않고 비평적 요소로서 인용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게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B 위원 : 저작권 일반론이 아니라 규정의 특수성이 있다고 봄.
- C 위원 : 저작권법 제104조의6 위반행위에 대해 저작재산권 제한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미국영화산업에서 한미 FTA 체결할 때 요구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규정임. 일반적으로 저작재산권 권리 침해 규정이었다면 인용에 해당할 수도 있고 감상평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부결할 수 있음. 다만, 제104조의6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독립된 형사처벌 규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권리제한 규정도

적용될 수 없도록 하였음.

- B 위원 : 공정이용 부분은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처벌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 까다로운 것임.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라고 한다면 D 위원님의 논리가 맞지만 별도의 형사 범죄로 만들어 놓고 한미 FTA 특수 제한 규정을 배제시키는 형태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임.
- D 위원 : 형사처벌 규정 위반을 이유로 심의위원회가 권고할 자격이 있는지?
- B 위원 : 저작권 침해 또는 방조에 대해서 권고를 했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면 경고의 시정권고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등’을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하는지가 모든 논의의 출발점임. ‘불법복제물등’은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에 해당함. 복제물 또는 정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제104조의6 조항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아닌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권리침해가 아니라 별도로 부과하는 의무위반에 따른 형사 체제임.
- C 위원 : 행정적으로 복제·전송자에 대해 계도하는 차원의 일정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함.
- 정현순 전문위원 :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전송한 것으로 쿠키 영상은 영상 속의 영상이라고 볼 수 있음. 쿠키 영상은 하나의 독자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여지도 있음. 다만,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아야 함. 안전번호 제2019-157867은 쿠키 영상만 게시되어

있고 안전번호 제2019-157868은 일부 감상평이 포함되어 있지만 쿠키 영상을 반드시 인용할 필요성은 보이지 않음.

- C 위원 :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함. 쿠키 영상에 대한 코멘트는 없음.

- 정현순 전문위원 : 공정이용이나 인용에 해당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임. 다만 심의위원회는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 권고를 하기 위한 필요성 측면에서 시장 대체 가능성이 없어 보이므로 경고만 할 수 있겠지만 형식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시정 권고 요건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됨.

- C 위원 : 검토보고 중에 “영화를 무단 녹화하는 행위가 곧바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의 의미는 영화 자체가 아닌 영화관 내에서 무언가를 찍는 행위까지를 내포하는 의미라고 생각함. 그런데 해당 안전은 쿠키 영상 화면을 바로 찍은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104조의6 위반은 물론이고 저작권 침해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임.

- B 위원 : 동일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104조의6 위반도 되고 동시에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저작권 침해를 배제하는 의미로 저작권법 제104조의6을 만든 것이 아님. 논리적으로 볼 때 둘 다 성립할 수 있음.

- C 위원 : 둘 다 성립할 수 있음. 다만, 제104조의6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와 같은 권리제한 항변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므로 쿠키영상 건은 양쪽에 모두 해당됨.

-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7조와 제136조의 관계에서 모두 해

당될 경우에는 제136조로 볼 수 있지만, 두 개 중에 제104조의6에만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때는 제137조로 봐야할 것임.

- C 위원 : 동일한 화면을 촬영하더라도 제136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항변으로 면책될 경우가 많음. 제137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이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고 미수범의 경우까지 처벌을 받는다는 것에 불과한 것임. 제136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적 이용을 위한 목적에 해당하여 법적 책임을 벗어나는 경우가 대부분 일 것임. 그러므로 경합이 된다면 제137조가 적용된다고 봐야할 것임.
- B 위원 : 두 가지 모두 저작권 침해와 저작권법 제104조의6에 동시에 해당이 된다고 했을 때 전자는 공정이용 또는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검토를 해보면 될 것 같음. 후자는 '불법복제물등'을 확장해석 해서는 안 됨. 다만 예방 기능적 차원으로 경고를 할 수 있음. 제136조에 대한 분석이 안 된 것으로 생각됨.
- 성원영 전문위원 : 원칙적으로 데드카피에 준하지 아니한, 즉 저작물의 일부만 제공하는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하지 않고 있음.
- 정현순 전문위원 : 시정권고 필요성 측면에서 시장 대체 가능성이 없다면 시정권고를 안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지만 사실상 저작권법 제104조의6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음을 게시자에게 알려준다는 점에서 경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C 위원 :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함. 계속 반복된다면 엄중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게시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음.

- B 위원 : 저작권 침해 행위에도 해당이 되고 저작권법 제104조의6에도 해당이 되는 것 같음. 전자로 보게 되면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음. 후자의 경우에는 시정권고의 대상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경고의 필요성은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104조의6은 불법복제물 정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성원영 전문위원 : 영화 '겨울왕국 2'의 쿠키영상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쿠키 영상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해당 안건을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제안함.
- B 위원 :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며 저작권법 제136조, 제137조의 관계도 정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137조가 적용될 경우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 여부를 정리하여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D 위원 : 저작권법 제104조의6을 적용하려면 녹화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어야 함. 이것이 입증되려면 최소한 게시자의 핸드폰 안에서 영상이 발견되어야 함.
- C 위원 : 형사처벌할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임.
- B 위원 : 보호원은 재판부가 아니기 때문에 유연하게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 정도의 증거만 가지고 저작권법 제104조의6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심의위원회가 경고의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157867호~157868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D 위원 : 안건번호 제2019-157867호~157868호는 전체위원회에 회부하여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 A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안건번호 제2019-157867호~157868호는 전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 C 위원 : 영화 쿠키 영상 게시물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보류하고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B 위원 : 안건번호 제2019-157867호~157868호는 쿠키 영상의 저작권 법적 해석과 함께 저작권법 제104조의6 위반죄의 시정권고 대상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함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57867호~157868호 영화 쿠키 영상 게시물은 결정을 유보하고 전체위원회에서 재심의하기로 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57869호~157871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네이버 이용자가 2016. 10. 일본 애니메이션 '도검난무 하나마루'의 오프닝과 엔딩곡 음원파일을 블로그에 게시한 사안임. 게시자가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음원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해당 저작물은 아마존 등에서 판매 중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157869호~157871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57869호~157871호는 일본 애니메이션 오프닝과 엔딩곡 음원파일을 첨부파일로 블로그에 올린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음원파일 등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가결 의견임.
- D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C 위원 : 특별한 이견이 없음.
- B 위원 : 일본 애니메이션 음원을 제공하는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임이 명백함으로 가결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57869호~15787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58571호~158573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존재하는 밴드 ‘○○○○○○○ ○○○○○○○’은 회원 수가 2019. 11. 24. 기준으로 7,514명이며, 소설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보임. 해당 밴드는 2019. 4. 24.경 공개 밴드로 확인되었음. 하지만 그 후 밴드와 게시글이 공개되지 않고 초대만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한 비공개 밴드로 변경되었음.
- B 위원 : 밴드를 공개했다가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과거의 전력, 가입자 수를 고려할 때 가결해야한다는 취지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 그러함.
- C 위원 : 비공개로 전환한 타이밍에 비춰봤을 때 스스로 불법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함.
- D 위원 : 폐쇄형 밴드는 폐쇄형으로 보아야 함. 비공개로 전환하였는데 공개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함.
- C 위원 : 공개성이라는 것은 비공개로 전환하였어도 회원 수의 규모나 회원가입의 용이성 등을 보아야 한다는 것임.
- D 위원 : 7천명의 회원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계정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없음. 7천명이라는 숫자만 보고 밴드가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범위를 확장해간다면 권한을 벗어나게 되므로 우려스러움.
- C 위원 : 위원님의 의견이 전적으로 맞음. 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서 보듯이 밴드 개설 목적, 가입의 용이성 내지 폐쇄성, 회원 수의 많고 적음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시정권고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밴드 개설의 목적이 소설을 불법복제하여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문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 D 위원 : 현재 해당 밴드는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인데 밴드의 소개글만 보고 불법적으로 소설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 과거의 이력으로 해당 밴드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적극성이 다소 지나친 것 같음.

- B 위원 : 위원님의 의견처럼 심의위원회는 해당 밴드가 비공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맞음. 다만 1기 심의위원회에서 동호회라는 것을 가장해 밴드에서 불법복제물을 공유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됨. 과거 심의위원회는 밴드 개설 목적, 가입의 용이성 내지 폐쇄성, 회원 수의 많고 적음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음. 기존의 기준에 비추어볼 때 해당 밴드는 어문저작물인 소설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한 것으로 보여지며, 대부분의 게시물이 어문저작물이었음. 회원 수도 1,000명에서 7,500명으로 몇 개월만에 급증하였고 해당 밴드에 시정권고 한 전례도 있음. 시정권고 이후 해당 밴드가 공개에서 비공개로 전환한 것을 비추어볼 때 시정권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냈으며, 시정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밴드의 소개글 사진에는 “공지 안읽는 분 눈을 파버리겠어요 공지 좀 봐주세요”라고 기재되어 있음. 공지에는 파일 업로드 방식 등의 내용이 포함됨.
다른 분과에서도 비공개 밴드에 대해 D 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함.
- B 위원 :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며,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D 위원 : 인지수사화될 것 같아 우려스러움.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158571호~158573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D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58571호~158573호는 현재 폐쇄된 밴드의 게시물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전체위원회 회부를 요청함.
- C 위원 : 네이버 밴드의 어문저작물 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보류하고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A 위원 : 해당 안전번호는 밴드의 폐쇄성 및 공개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여 전체위원회에 상정하면 될 것 같음.
- B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58571호~158573호는 밴드의 폐쇄에 따른 시정권고 필요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해당 안전번호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58571호~158573호 네이버 밴드의 어문저작물은 결정을 유보하고 전체위원회에서 재심의하기로 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57872호~158570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영화 '토이 스토리 4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58017호는 2019. 6. 20. 개봉한 미국 시리즈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
(영화 '애나벨 집으로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58209호는 2019. 6. 26. 개봉한 미국 영화를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
(게임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2'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58315호는 2019. 11. 15. 출시된 최신 게임물을 웹하드에서 3,550 캐시에 판매한 사안임. 정품은 약 21,000원에 판매 중이며 배급사는 엑스박스 게임 스튜디오임. 보호원이 해당 게임물을 모니터링한 날짜는 2019. 11. 25.임.

(영화 '니나 내나 (2018)'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58483호는 2019. 10. 30.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를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

(음악 'Love poem (가수: 아이유)'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58491호의 음원파일은 2019. 11. 18. 발매된 최신곡으로 앨범 'Love poem'에 수록되어 있음. 해당 곡의 실연자인 아이유가 작사를 하였음. 해당 음원파일을 업로드한 복제·전송자는 해비 업로더임.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하면 약 101개의 음원을 이용할 수 있음. 해당 음원파일은 최근 불법복제물로 다수 발견되고 있음.

(영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58563호는 2019. 9. 25. 개봉한 미국, 영국 영화를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청소년 관람 불가임.

(영화 '람보 : 라스트 워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58570호는 2019. 10. 23. 개봉한 미국 최신 영화를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157872호~158570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모두 불법 복제된 음악, 만화, 출판, 영상물, 프로그램, 게임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단되어 가결 의견임.
- C 위원 : 모두 데드카피 불법 전송 사안이며, 심의일 현재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 조치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D 위원 : 시정권고하는 의견에 동의함.

- A 위원 : 이견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57872호~158570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5786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전번호 제 2019-157867호~157868호 영화 쿠키 영상 게시물, 안전번호 제2019-158571호~158573호 네이버 밴드의 어문저작물은 결정을 유보하고 전체위원회에서 재심의하기로 함. 그 밖에 안전번호 제2019-157869호~158570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27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27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2. 10.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박성호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